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4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13조의2, 2023. 9. 14. 시행)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33조의3, 2024. 3. 26.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성북구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우수선수 육성지원, 구립체육단 운영 및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 사.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 아.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 라. 입법예고: 2025. 4. 3. ~ 2025. 4.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체계적인 스포츠교육과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4.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

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의 보급,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자매도시 및 국제 교류

3. 생활체육동호인 조직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성북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우수선수 육성지원)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립체육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구립체육단(이하 “체육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의 의결을 거

쳐 구청장이 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체육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체육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단체 등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성북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부·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성북구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7조에 따라 대부·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대부·사용허가 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기간은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부·사용허가는 대부·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대부·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대부·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